

[사 건 명] 행심 2018 - 28

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학교에서의 봉사 3일(총6시간)』 처분
취소 청구

□ 청구인 : ◇◇◇

□ 피청구인 : ○○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8. 05. 31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
가해에 따른 『학교에서의 봉사 3일 등』 처분을 취소한
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 ◇◇◇는 ○○고등학교 학생이고, 피청구인은 ○○고등학교장으로,
피청구인은 2018. 5. 31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
에게 ●●●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
법률」(이하 ‘학폭법’이라 한다) 제17조에 의거 「학교에서의 봉사 3일(총
6시간)」 처분을 하였다.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

나. 청구인은 2018. 6. 4.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, 이 사건 처분에
의의가 있어서 2018. 6. 11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

기 하였다.

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.

가. 청구인은 이 사건 전에 ●●●과 다툼이 없었고, ●●●과 싸움을 원하지 않았으며, 일방적 폭행을 당하여 코뼈와 이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었음에도 학교봉사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.

나. 청구인은 정보처리과 반장으로 조 편성 학급 일을 처리할 때 ●●●이 불만을 제기하여 제비뽑기 방법으로 조 편성까지 했지만, ●●●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면서 폭력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.

다. 청구인은 과 반장으로 책임을 다한 것임에도 가해자가 된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진학에 대한 불안함도 호소하고 있다.

III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가. 청구인과 ●●● 간에 이 사건 전에 다툼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, 이 사건은 일방적 폭행 사건이 아니라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은 쌍방폭행 사건이고, 이는 ●●●의 진술뿐 아니라 싸움을 목격한 학생들의 사실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.

나. ●●●이 조 편성에 불만을 품고 청구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, 청구인도 ●●●에 대응해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간과할 수 없고,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에 관하여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1점, 지속성 0점, 고의성 1점, 반성정도 3점, 화해정도 0점 등 총 5점으로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처분을 한 것이다.

다. 이 사건 처분은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행한 것으로 적법, 타당한 처분이다.

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

1. 관계법령

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7조,

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

2. 판 단

가.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‘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협박, 약취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고,

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나.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, 목격 학생들의 사실확인서, 청구인과 ●●●, 담임교사의 학폭위에서의 각 진술,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

- 청구인과 ●●●은 ○○고등학교 제품과 1학년 2반 학생이었고, 2018. 5. 17. 1교시 정보처리와 관리수업시간에 '조 편성'을 하는 과정에 ●●●이 불만제기를 하여, 정보처리과 과반장인 청구인과 ●●●간에 언쟁이 있었다.

- 1교시 수업종료 후 ●●●이 청구인에게 다가와 사물함을 팡 닫고 청구인 멱살을 잡고 밀치자 청구인도 멱살을 잡고 밀쳤고, ●●●이 주먹으로 먼저 치자, 청구인도 주먹으로 대응해서 싸우다가, 청구인이 코피가 나면서 싸움이 종료됐는데, 그 싸움으로 청구인은 코뼈가 골절되고 이가 부러졌으며, ●●●은 얼굴, 목에 상처를 입었다.

-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●●●을 밀쳤던 점만 인정하고, 주먹으로 때린 점은 '기억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' 며 부인하나, ●●●은 학급반장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하고, 싸움을 목격한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'서로 얼굴 위주로 때리고 막고 했다' '주먹으로 서로 심하게 때렸고 청구인이 코피가 나자 ●●●을 제압했는데 청구인이 계속하여 때리려고 했다' 는 등의 내용을 볼 때, 청구인과

●●●이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은 점이 인정되다.

다. 따라서 청구인이 ●●●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행동들은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.(청구인은 ●●●을 밀친 점만 인정하고 주먹으로 때린 점은 부인하면서도 ●●● 상처부위에 관하여 ●●●이 밀쳐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쳐 생긴 것이라고 진술해서, 자신의 행위로 ●●●에게 상처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밀쳐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.)

라.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
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, 청구인에게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면서, 이 사건 이전에 서로 간에 다툼이 없었고 본 사건도 ●●●이 먼저 밀치고 가격하며 발생한 사건이며, ●●●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사과하며 치료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심각성 1점, 지속성 0점, 고의성 1점, 화해정도 0점을 부여했고, 반성정도에 대해서만 청구인이 주먹으로 때렸던 점을 부인하므로 3점을 부여해서 총 5점으로 판정하고, 그에 해당하는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,

피청구인은 위 학폭위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, 타당하다.

3. 소결론

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,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,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, 타당하다.

V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,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